삼척시 공고 제2021-196호

##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감염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「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15일 삼 척 시 장

- 1. 적용기간 : 2021.2.15.(월) 0시 ~ 2.28.(일) 24시
- 2. 처분대상 및 처분내용

## 〈완화 불가조치 사항〉

-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
-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(22시) 조정

## 〈의무화되는 방역수칙〉

구분	비수도권 (거리두기 1.5단계+방역수칙 조정)	
① 모임·행사		
사적 모임	<ul> <li>▶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</li> <li>★ (제외)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, 아동, 노인,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,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</li> <li>스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</li> </ul>	
기타 모임·행사	▶ 500명 이상 시 지자체 신고·협의 ▶ 집회·시위, 대규모 콘서트, 축제,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 제한 ▶ 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100인 기준 미적용	
② 다중이용시설 : 중점·일반관리시설 등		
공통수칙	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(상점·마트·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)	

구분	비수도권 (거리두기 1.5단계+방역수칙 조정)
유흥시설 5종, 홀덤펍	<ul> <li>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/li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유흥종사자 포함)</li> <li>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</li> <li>▶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</li> <li>▶ 주사위,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장갑 착용</li> </ul>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▶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<u>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/u> ▶ 노래·음식 제공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노래연습장	▶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
실내 스탠딩공연장	▶음식섭취 금지 ▶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
식당·카페 (무인카페 포함)	<ul> <li>▶ 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</li> <li>▶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%만 활용하되,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(시설 면적 50㎡ 이상)</li> <li>▶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</li> </ul>
파티룸	▶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(개별 방 면적대비 8m²당 1명)  *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▶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m²이상)
실내체육시설 (실내겨울스포츠시설 포함)	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
실외겨울스포츠시설 (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)	▶ 수용인원의 50%로 인원제한           ▶ 타 지역-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         ▶ 장비·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         ▶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

구분	비수도권 (거리두기 1.5단계+방역수칙 조정)
	▶ 직원·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         ▶ 부대시설 중 식당·카페의 경우 식당·카페 수칙 적용           ▶ 탈의실·오락실 등의 시설은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        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
학원·교습소 (독서실 제외) 직업훈련기관	▶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
결혼식장	▶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
장례식장	▶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
목욕장업	▶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영화관	▶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
공연장	▶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
PC방	▶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오락실·멀티방 등	▶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독서실·스터디카페	▶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
놀이공원·워터파크	▶수용가능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
이·미용업	▶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
백화점·대형마트	<u>▶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</u> ▶ 마스크 착용
마트·상점 (300㎡ 이상)	▶ 마스크 착용 ▶ 주기적 환기·소독

구분	비수도권 (거리두기 1.5단계+방역수칙 조정)	
② 기타 다중이용시설		
숙박시설	<ul> <li>▶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</li> <li>▶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금지</li> <li>▶ 숙박시설 주관 파티·행사 개최 금지,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</li> <li>▶ 객실 정원관리 철저,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</li> <li>안내문 게시</li> </ul>	
국공립시설	▶ 경륜·경마·경정·카지노 20% 이내로 인원 제한 ▶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% 이내로 인원 제한	
사회복지이용시설	▶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	
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		
마스크 착용 의무화	▶ 중점·일반관리시설, 집회·시위장, 대중교통, 의료기관·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·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·행사,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	
교통시설 이용	▶ 마스크 착용	
스포츠 관람	▶ 30% 이내로 관중 입장	
등교	▶ 밀집도 2/3 준수	
종교활동	▶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 수 30% 이내 인원 참여 ▶ 종교시설 주관 모임·식사 금지 *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·행사 금지	
직장근무	<ul> <li>▶ 공공기관은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,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·회식 자제</li> <li>★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</li> <li>▶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/3 이상(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)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</li> <li>▶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</li> </ul>	

- 3.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권자 : 삼척시장
- 4. 처분내용: 적용 대상시설 단계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가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(올바른 마스크 착용\*, 출입자 명단관리, 환기·소독 등)나.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, 유흥시설 운영제한 시간(22시)은 완화 불가 조치다. 모임·행사, 직장 근무, 등교 등 일상적 활동에 대해 차등적, 단계적으로 방역 강화라.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, 관리·운영자 300만원 이하)
- 5. 처분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, 제80조, 제83조
- 6. 처분사유 :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집단감염 등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및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
- 7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. 2. 15.(월) 0시
- 8. 처분서의 교부요청 : 처분 당사자는 「행정절차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9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10.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(300만원 이하의 벌금) 되거나, 제83조 제2항에 따라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, 제8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과태료 처분 등과 별개로 해당 업소 등에 관해 영업이 전면 금지되며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・조사・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